

정비구역 ☐ [] 지정 ☐ 제안서
[] 변경지정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		
제안자	기관명 (법인명)					
	대표자					
	주소					
	전화번호					
정비사업 개요	사업명					
	사업종류	☐ 재개발사업		☐ 재건축사업		
	사업시행자		대표자 성명		주사무소 소재지	
	시행 예정일					
	정비구역의 위치					
	정비구역의 면적	m ²				
	정비구역의 용도지역					
	계획 인구 및 세대수					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1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(변경지정)을 제안합니다.

년 월 일

제안자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첨부 서류	1. 토지이용,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80조의4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	수수료 없음
----------	--	-----------

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